

불법광고물 OUT!! 안전하고 쾌적한 **클린 예천** 함께 만들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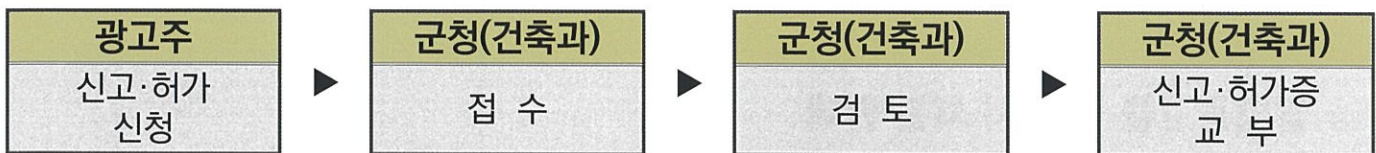
옥외광고물 신고·허가 대상 및 절차 안내

● 신고 및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

광고물 유형	허가대상	신고대상	자율설치
고정	벽면간판 ◦ 한변이 10m이상 ◦ 건물 4층 이상	◦ 면적 5㎡ 이상	◦ 면적 5㎡ 미만
	돌출간판 ◦ 신고대상이 아닌 돌출간판	◦ 의료기관, 약국, 이·미용업소의 표시등 ◦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미만 ◦ 한 면의 면적이 1㎡ 미만	
	지주간판 ◦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	◦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	
	창문간판 ◦ 창문을 이용한 네온류, 전광류, 디지털 광고물		◦ 유리벽·창문 등 전체 면적의 1/4 이내, 최대 1㎡ 이내
유동	입간판	◦ 모두 신고대상(전기이용불가)	
	현수막	◦ 모든 현수막(관혼상제, 집회 등 일부 제외)	
	전단·벽보	◦ 모두 신고대상	

● 신고 및 허가 시기 : **광고물을 설치하기 전**

● 옥외광고물 신고·허가 절차

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

내 용	비 고
◦ 대 상 지 : 예천읍, 호명면 ◦ 참여자격 : 만 19세 이상 예천군민 ◦ 수거대상 : 전단지(명함형 포함), 벽보 ◦ 보 상 금 : 전단지 1매 20원 / 벽보 1매 30원 (최소 50매 이상) ◦ 제 출 처 : 예천읍 또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통장사본 함께 제출)	2023. 1. 1. 기준 보상금 상향 (전단지 1매 30원 / 벽보 1매 50원)



예천군 건축과 [☎. 054-650-6937]

불법광고물 유형 및 처분 안내

● 불법광고물 대표 유형



(현수막 게시대 외) 현수막



풍선간판[에어라이트]



(미신고) 전단지



(미신고·지정벽보판 외) 벽보



(설치 규정 위반) 입간판



무허가 LED·LCD 전광판

● 불법광고물 적발 시 처분 안내

처 분	대 상
500만원 이하 과태료	◦ 미신고·허가 및 설치 규정 위반 유동광고물(현수막, 전단, 입간판 등) ※ 현수막은 장당 과태료 부과 ◦ 옥외광고물 실명제 규정 위반 광고물
500만원 이하 벌금형	◦ 미신고 고정광고물
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	◦ 미허가 고정광고물 ◦ 옥외광고업 등록을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영위한 자



예천군 건축과 [☎. 054-650-6937]